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. 4. 21 선고 2014가합730 판결 [점유회수 및 손해배상(기)]

재판경과

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 9. 29 선고 2016나519 판결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. 4. 21 선고 2014가합730 판결

전문

원고 A

피고(선정당사자) B

변론 종결 2016. 3. 17.

판결 선고 2016. 4. 21.

주문

1. 원고의 피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

피고(선정당사자, 이하 '피고'라 한다)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, 가. 통영시 C 전 1,220㎡ 및 통영시

D 대 132㎡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, 나. 통영시 C 전 1,220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ㄱ)부분 지상 철근콘크리트 대형저수조(간이상수도 대형저수조탱크) 견고한 건축물 150㎡를, 다. 통영시 C 전 1,220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6㎡ 및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二)부분 지상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8㎡를, 라. 통영시 D 대 132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지상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10㎡를 각 인도하라. 피고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2013. 3. 14.부터 위 각 부동산들을 인도 및 원상회복할 때까지 월 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. 3. 14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1984. 4. 26. 통영시 D 대 132㎡(이하 '이 사건 D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같은 날 위 토지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46.15㎡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D 토지에 인접한 통영시 C 전 1,045㎡, 통영시 E 전 175㎡는 소외 주식회사 창용주택건설 소유이었는데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. 9. 28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임의경매절차'라 한다)가 개시되었고,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. 9. 29.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. 원고는 2011. 10. 6.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점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. 11. 11. 위 매각허가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.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1라403호로 항고하였으나

위 법원은 2012. 6.14.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고를 각하하였다. 원고는 대법원 2012마1063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2. 7. 26.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.

다.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2. 10. 18. 통영시 C전 1,045㎡, 통영시 E 전 175㎡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후 통영시 C 전 1,045㎡, 통영시 E 전 175㎡는 2012. 12. 11. 통영시 C 전 1,220㎡(이하 '이 사건 C 토지'라 하고, 이 사건 D 토지와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로 합병되었다.

라. 피고는 2013. 2. 12.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을 받았고,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3라126호로 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. 4. 23.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, 2013. 7. 26. 대법원 2013마824호로 원고의 재항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(이하에서는 피고 및 선정자들을 가리킬 때 편의상 '피고들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1) 피고들의 점유 침탈 -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면서 지상에 간이상수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수년간 식수 및 농업용수를 공급해왔고, 이 사건 D 토지 및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,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C 토지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(ㄱ)부분 철근콘크리트 대형저수조(간이상수도 대형저수조탱크) 견고한 건축물 150㎡(이하 '(ㄱ) 저수조'라 한다), 같은 도면 표시 5, 6, 7, 8,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6㎡(이하 '(나) 창고'라 한다), 같은 도면 표시 9, 10, 11, 12,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ㄷ)부분 목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8㎡(이하 '(ㄷ) 창고'라 한다), 이 사건 D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13, 14, 15, 16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ㄹ)부분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스테이지붕 단층 창고 10㎡(이하 '(ㄹ) 창고'라 하고, 위 저수조 및 창고를 통칭하여 '이 사건 각 시설물'이라 한다)를 점유하여 관리해오고 있다.

그런데 피고들은 2013. 3. 14.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시설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후 이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.

2) 인도청구 - 따라서 피고들은 민법 제204조에 따라 원고에게, 강제로 침탈한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시설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) 손해배상청구 -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매월 차임 500,000원을 지출하게 되었는데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서 2013. 3. 14.부터 위 각 부동산들을 인도 및 원상회복할 때까지 월5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상 시설물의 점유를 침탈하면서 원고가 재배하고 있던 수목 훼손에 대한 손해 30,000,000원, 간이상수도 시설 파괴 및 식수 공급중단으로 인한 손해 35,000,000원,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60,000,000원이 각 발생하였으므로, 피고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1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 단

1) 이 사건 C 토지 및 (ㄱ) 저수조, (나) 창고, () 창고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위 토지 및 각 시설물을 점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가사 원고가 이 사건 C 토지 및 (ㄱ) 저수조, (나) 창고, (二) 창고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G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C 토지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, 선정자들이 위 토지 및 각 시설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,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이 사건 D 토지 및 지상 (ㄹ) 창고에 관하여 보건대, 원고가 이 사건 D 토지 및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, 피고들이 위 토지 및 지상 주택, (ㄹ) 창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

3) 결국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각 시설물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인도 및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성원, 판사 백지예, 판사 정혜승

선 정 자 명 단

1. B
2. H
3. I
4. J
5. K
6. L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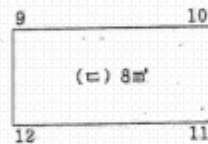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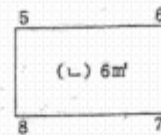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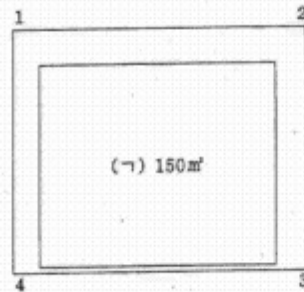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경상남도 통영시 전 1,220㎡

도면

(ㄱ) 경상남도 통영시 전 지상 철근콘크리트 대형저수조 권고
한 건축물 150㎡ 평면도, (ㄴ) 경상남도 통영시 전 지상 목조
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6㎡ 평면도, (ㄷ) 경상남도 통영시 전
지상 목조 스텔리지붕 단층 창고 8㎡ 평면도



별지2

부동산의 표시

경상남도 통영시 대 132㎡

도 면

(㉮) 경상남도 통영시 대 지상 목조 및 시멘트블록조 스테트지
 봉 단층 창고 10㎡ 평면도

